

입법예고 종법령명	중앙신도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령 개정안		
담 당	포교원 포교부 포교지원팀 (02-2011-1916)	입법예고일	2025년 2월10일 ~ 3월 1일

1. 이유 및 취지

- 중앙종무기관 조직 개편에 따른 조문 수정과 중앙신도회 '2019년 개정 된 회칙'에 근거하여 중앙신도회 회칙과 일치하지 않는 조문을 수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중앙종무기관 조직 개편에 따라 관련 조문을 수정함(제4조, 제5조, 제12조, 제13조, 제16조, 제17조 개정)
- 나. 회칙과 일치하지 않은 조문을 수정함(제6조, 제8조, 제10조 개정).

3.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영은 신도법 제36조 내지 제39조에 규정된 중앙신도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중앙신도회가 본종의 신도 대표기구로서 원활한 역할을 수행하여 중단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	제1조(목적) 이 영은 신도법 제36조 내지 제39조 에 규정된 중앙신도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중앙신도회가 본종의 신도 대표기구로서 원활한 역할을 수행하여 중단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
제4조(회칙 변경) 중앙신도회는 회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포교원과 사전협의를 거쳐 총무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	제4조(회칙 변경) 중앙신도회는 회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포교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총무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제5조(총재 등) ① 중앙신도회는 본종의 중정을 증명으로 하고, 총무원장을 당연직 총재로 하며, 포교원장을 당연직 부총재로 한다. ② 중앙신도회는 총회에서 추대하는 약간명의 고문을 두며, 본종 교육원장은 당연직 고문이 된다. ③ 중앙신도회는 지도법사와 지도위원, 이사 등을 둘수 있으며,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회칙으로 정한다	제5조(총재 등) ① 중앙신도회는 본종의 중정을 증명으로 하고, 총무원장을 총재로 하며, 포교부장을 당연직 상임 지도법사로 한다. ② 중앙신도회는 총회에서 추대하는 약간명의 고문을 둔다. ③ (현행과 같음)

현행	개정안
<p>다.</p> <p>제6조(총회) ① 중앙신도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.</p> <p>② 중앙신도회는 년 1회 정기총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회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위원회에서 이를 대신할 수 있으며 다음의 각호의 1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임시총회를 개최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총재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대의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<p>③ 삭제</p> <p>④ 삭제</p> <p>⑤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며,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다음의 각호의 경우에는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회장의 불신임 중앙신도회 해산 회칙의 개정 	<p>제6조(총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현행과 같음)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감사가 서면으로 요청한 때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본 회의 안건과 소집 사유를 서면으로 의장 또는 회장에게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<p>③ 삭제</p> <p>④ 삭제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1~3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조(삭제)</p>	<p>제7조(삭제)</p>
<p>제8조(대의원) ① 중앙신도회의 대의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중앙신도회 회장단 교구신도회별 임원 중단등록 전국단위 신도단체별 임원 <p>② 전항 각호 대의원은 중단 신도등록을 한 자 중 기본교육 및 재교육을 이수한 자로 구성하며, 대의원의 수 등 세부사항은 회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8조(대의원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회장 선임직부회장 중단 소속 교구신도회에서 선출한 중앙신도회 대의원 중단 등록 전국단위 신도단체에서 선출한 중앙신도회 대의원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9조(삭제)</p>	<p>제9조(삭제)</p>
<p>제10조(회장단 선임 등) ① 중앙신도회의 회장 및 감사는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하며, 본중 포교원장의</p>	<p>제10조(회장단 선임 등) ① 중앙신도회의 회장 및 감사는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하며, 포교부의 추천으</p>

현행	개정안
<p>추인으로 총무원장이 승인한다.</p> <p>② 회장 및 감사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3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. 보궐 선출된 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.</p> <p>③ 회장 및 감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</p> <p>④ 선임직 부회장은 대의원총회의 인준으로 회장이 임면하며, 당연직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.</p>	<p>로 총무원장이 승인한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회장 및 감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</p> <p>④ 선임직 부회장은 대의원총회의 인준으로 회장이 임면하며, 교구신도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.</p>
<p>제12조(예산 및 결산 등) ① 중앙신도회의 회계연도는 중단의 회계연도에 의한다.</p> <p>② 중앙신도회는 포교원 포교부에 매회계년도 개시 전에 익년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제출하고 매회계년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③ 포교원장은 제2항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수정을 요구받은 중앙신도회는 1월 이내에 수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제12조(예산 및 결산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중앙신도회는 총무원 포교부에 매회계년도 개시 전에 익년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제출하고 매회계년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③ 포교부장은 제2항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수정을 요구받은 중앙신도회는 1월 이내에 수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제출하여야 한다.</p>
<p>제13조(감독) 포교원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중앙신도회에 그 업무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업무·재산관리 및 회계를 감사하여 그 적정을 기하고, 설립목적에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.</p>	<p>제13조(감독) ① 포교부장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중앙신도회에 그 업무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업무·재산관리 및 회계를 감사하여 그 적정을 기하고, 설립목적에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중앙신도회의 재정 충당 등의 목적을 위해 시행하는 수익(일반) 목적 사업은 포교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총무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p>
<p>제16조(임원에 대한 징계) 중앙신도회 임원이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포교원장은 총무원장의 승인을 받아 그 취임을 취소할 수 있다.</p> <p>1. 중법 또는 이 영이나 회칙에 위반한 때</p> <p>2. 임원간의 분쟁, 회계부정,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인하여 중앙신도회의 설립목적에 달성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생기게 된 때</p> <p>3. 설립목적 사업 이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는 때</p>	<p>제16조(임원에 대한 징계) 중앙신도회 임원이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포교부장은 총무원장의 승인을 받아 그 취임을 취소할 수 있다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제17조(주무부서) 중앙신도회에 관한 업무는 포교원 포교부 에서 담당한다.	제17조(주무부서) 중앙신도회에 관한 업무는 총무원 포교부 에서 담당한다.
<신설>	부칙<불기2569(2025).00.00 개정> 제1조(시행)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